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 용 감 독 원

우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전화 02-3145-7286 / 전송 02-3145-7286
처리부서 보험영업검사실 검사3팀 팀장 홍장희 담당자 수석검사역 김홍건

문서번호 보영검삼 -00006

시행일자 2014.01.0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사본수신

제 목 손해사정업무 위탁관련 시정요구

1. 우리 원은 손해사정법인과 보험회사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고, 손해사정법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3.12월 손해사정법인 중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업(業)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非자회사 38개사를 선정하여 「손해사정법인의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동 실태점검 결과, 일부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손해사정업무 위탁범위 외의 업무를 강요하거나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어 시정을 요구하니 개선하기 바라며, 향후 손해사정법인 및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검사시 미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합의서 징구 등 손해사정 위탁업무 범위 외 부당 요구행위 상존

(실태)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손해사정업무 범위 내 위탁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보험회사가 합의서(삭감지급, 계약해지 조건부 지급 등)를 징구토록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만연

* '13.8.29. 우리원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위탁범위를 벗어나 합의서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해 조치한 바 있음

(개선)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정한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범위 내에 한해 위탁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수수료 지급기준 불합리

(실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험회사가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 제지급금액을 절감하는 경우 기본수수료 이외에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불합리한 수수료 지급기준 사용

(개선) 손해사정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수수료지급기준 정비할 것(보험사기 관련 조사 차등지급은 제외)

다. 손해사정수수료의 장기 미지급 행위 만연

- (실태) 보험회사의 위탁결정에 의해 손사법인의 매출이 영향을 받음에 따라 위탁해지 불이익을 우려하여 미지급수수료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가 어려운 현실

* 실태점검 대상 38개사의 미수금은 16억원(보험회사 중 최고 : 3.6억원)규모로 집계되었으나 더 많은 규모의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

- (개선) 보험회사별로 기한 초과한 미지급수수료('13.12월말 기준, 손해사정 보고서가 제출된 전건)를 1.24.까지 지급하고,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27.까지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

금 용 감 독 원



수 신 처 차(1-20, 23-27, 29-32, 37, 56, 58-61)